

# 2025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업공동사업 모집(추가)공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관리와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식품진흥원은 입주 및 국내 식품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5년도 기업공동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9월 1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기업 간, 관련 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촉진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형 협력비즈니스 모델 구축
- 지원대상: 푸드e음 가입기업 ※ 1과제당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50% 이상 포함 조건  
\* 사업신청전 푸드e음([www.foodpolis.kr/fbip](http://www.foodpolis.kr/fbip)) 회원가입 필수
- 지원규모: 18백만원(기업자부담 별도)  
\* 2개 이상의 기업으로 구성, 각 과제 기업당 지원한도 상이
- 공고기간: '25. 9. 1.(월) ~ 9. 12.(금) 16:00까지
-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 11. 28.(금)이내
- 접수기간: '25. 9. 1.(월) ~ 9. 12.(화) 16:00까지 ※ 마감(16시) 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식품진흥원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https://www.foodpolis.kr/dfip>)

## 2. 사업비 구성

○ 지원금 40~80%, 자부담 20~60%

구 분		'20-'24년 누적 지원금액별 정부지원 비율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입주기업/청년기업		80%	70%	60%
비입주 기업	중소기업	70%	60%	50%
	중견기업	60%	50%	40%

\* '20~'24년까지 신청기업이 식품진흥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총 금액임(권역별산학연사업 제외)

\*\* 누적지원금액 미확인으로 기업부담률 오기입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

\*\*\* 누적지원금액 문의: 클러스터육성부 강성란 차장(063-720-0578)

○ 지원금 총량을 유지하되 참여기업 간 자부담 비율을 조정하여 주관 기업의 자부담금을 참여기업이 부담할 수 있음

### ※ 사업비 구성 예시

구분	사업비 구성	
	지원금	자부담금
80%:20% 일 경우 / 2,250만원	1,800만원	450만원
주관기업	600만원	-
공동 참여기업 1	600만원	225만원
공동 참여기업 2	600만원	225만원
70%:30% 일 경우 / 2,571만원	1,800만원	771만원
주관기업	600만원	-
공동 참여기업 1	600만원	385.5만원
공동 참여기업 2	600만원	385.5만원
비율이 다를 경우 / 2,357만원	1,800만원	557만원
주관기업(80%:20%)	600만원	-
공동 참여기업 1(70%:30%)	600만원	332만원
공동 참여기업 2(80%:20%)	600만원	225만원

\* 컨소시엄 구성사 중 한 기업이 보조금의 70%(금액) 이상 소요할 경우 초과 소요된 금액에 대해서는 불인정

## 3. 지원내용

○ 추진체계

- 과제당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50% 이상 포함하여 푸드e음 회원사로 컨소시엄 구성(주관기업+참여기업)

○ 지원분야

- 과제당 최대 3개 항목 선택 가능

지원분야	지원항목	세부내용	지원금액
기업 공동 사업	공통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기업구성으로 동일 항목 연속 지원불가</li> <li>• 참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푸드e음 회원사 입주기업(분양기업, 벤처센터입주기업)</li> <li>②푸드e음 회원사 외부기업(식품제조기업 등 과제와 연계 가능 중소기업)</li> </ul> </li> <li>• 전체 참여기업의 50% 이상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으로 구성(최소 2개사 이상 컨소시엄)</li> </ul>	
	공동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사 간 물류를 구성하여 공동배송하는 국내 물류비 지원 (운송, 창고임차 등 제조사의 국내물류 관련 항목 지원)</li> </ul>	기업당 4백만원 이하
	공동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사 간 공동원료 구매 지원 (공동으로 수입산을 대체하는 국산 원료·반가공 부자재 구매 지원)</li> </ul>	기업당 4백만원 이하
	공동브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사 간 공동브랜드를 개발 및 상표권 지원 (공동브랜드 개발, 디자인 컨설팅, 홍보비, 상표권 등록 등)</li> </ul>	기업당 8백만원 이하
	공동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사간 공동 국·내외 공동판로 활동 지원 (공동 판촉행사에 필요한 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초청비 등)</li> </ul>	기업당 8백만원 이하

\* 동일 기업 간 동일 항목 연속 지원불가

4. 추진절차

절차	내용	비고
공고 시작 (25.9.1.~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진흥원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a href="https://www.foodpolis.kr/dfip">https://www.foodpolis.kr/dfip</a>)을 통한 공고 안내</li> </ul>	신청기업
사전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 기간 내 식품진흥원 담당자와 협의하여 상담진행 (담당자 연락처 참고)</li> </ul>	신청기업 식품진흥원
접수 기간 (25.9.1.~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털서비스(<a href="http://fiis.foodpolis.kr">http://fiis.foodpolis.kr</a>)를 통한 온라인 신청</li> <li>• 신청기간 마감 후 별도의 서류 보완 기간 없음</li> </ul>	신청기업
서류 검토 (25.9.15.~9.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제출 서류 구비 여부 검토 (세부사항 &lt;7. 선정평가&gt; 참고)</li> </ul>	식품진흥원
평가 (25.9.17.~9.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위원(내·외부 5~7인) 질의응답을 통한 타당성 검증 (세부사항 &lt;7. 선정평가&gt; 참고)</li> </ul>	식품진흥원 평가위원회 신청기업

<b>협약 체결</b>	· 선정평가 의견에 따른 사업비, 기간 최종 확정 및 계획서 보완 후 협약 체결 · 현물 증빙서류 및 협약서 제출 ·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제출(필요시)	신청기업
<b>사업수행</b> (협약 체결 후 사업 종료일까지)	· 협약시 계획서에 따른 사업 실시	식품진흥원 컨설턴트 신청기업
<b>중간점검</b> (사업기간 1/2시점)	· 협약 기간 중간 시점에 과제 진척률 점검 (협약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협의하에 서류대체 또는 생략 가능)	식품진흥원 신청기업
<b>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b> (사업종료 15일전)	· 협약서에 따른 성과물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 결과 최종 평가	식품진흥원 평가위원회 신청기업
<b>사업비 정산</b>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	· 기업부담금 또는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과제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기업
<b>사후관리</b>	· 사업 성과 활용에 대한 사후 관리 실시 (사업 종료 후 필요에 따라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식품진흥원 신청기업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선정평가지 외부위원들의 평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협약시 담당자와 협의 가능함. 단 선정평가에서 책정된 최대 사업기간은 초과하지 못함

## 5.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푸드e음 회원사

\* 사업신청전 푸드e음([www.foodpolis.kr/fbip](http://www.foodpolis.kr/fbip)) 회원 등록 → 담당자 승인 → 가입완료

○ 지원제외 대상

- 정부 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제재 조치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 받고 있는 기업
-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 \* 단,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신청(지원) 가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제출서류에 의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제재조치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가능

## 6. 신청방법

○ 접수 방법: 식품진흥원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https://www.foodpolis.kr/dfip>)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방문접수, 우편접수, 현장접수 불가)

### <온라인 신청절차>

<b>Step 1</b>	<b>Step 2</b>	<b>Step 3</b>
식품진흥원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 <a href="https://www.foodpolis.kr/dfip">https://www.foodpolis.kr/dfip</a> )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업회원 전환신청 → 권한전환[[식품진흥원 담당자] 완료 후, 사업신청	[기업지원사업]-[사업공고] 메뉴에서 사업공고 목록 확인
<b>Step 4</b>	<b>Step 5</b>	<b>Step 6</b>
[사업공고] 신청 분야 선택	신청사업 정보 입력 후 [신청] 시 지원신청 완료 ※ 사업별로 지정된 신청서(양식) 작성 및 필수 제출서류 첨부	[지원사업신청목록]-[사업신청 내역]에서 신청확인 및 수정, 선정결과 확인 가능

<b>공고 및 전산(<a href="https://www.foodpolis.kr/dfip">https://www.foodpolis.kr/dfip</a>) 등록기간</b>
2025. 9. 1(월) ~ 2025. 9. 12(금) <b>오후 4시 까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기간 중 상시 수정 가능하며, 마감시간(오후 4시) 이후 수정 및 접수 불가</li> <li>※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모든 제출 서류를 전산등록 완료하여야 함</li> <li>* 마감 당일은 포털서비스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b>마감 하루 전 제출 완료 권장</b></li> </ul>

## ○ 제출 서류

구분	서 식 명	비 고	
필수 서류	1	기업공동사업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붙임 2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붙임 3
	3	중복수혜금지약약서	붙임 4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3개월 이내 발급본	-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3개월 이내 발급본) 사본	※ 원본대조필
선택 제출	6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또는 매출액 증빙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매출액 증빙서류 택 1 제출 ①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최근3년간) ②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텍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등)의 매출액 기준(최근3년간)	※ 원본대조필  미제출 시 중견기업 기준 기업부담금 비율적용
	7	가점증빙서류 ① (국산농산물 사용기업) 농산물 원산지증명서, 출하증명서,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등 국내산 주원료 사용을 입증하는 자료 ② (수출기업)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원	붙임 5 제출누락시 가점 미부여

## 7. 선정평가

### ○ 서류검토

- 검토목적: 필수 서류 제출 여부 검토
  - \* 필수 서류 미제출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발표평가 미진행
- 검토기간: 공고 종료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 검토방법: 식품진흥원 담당자의 제출 서류 검토 \* [붙임6] 참고
- 결과안내: 발표평가 대상자에 한해 3월 14일(금)까지 안내
  - \* 상황에 따라 결과안내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 발표평가

- 평가목적: 사업계획의 필요성, 적합성, 사업활용성 등 평가
- 일시/장소: 서류검토 종료 후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 평가방법 \* [붙임7] 참고
  -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내용으로 발표자료\*(PPT, PDF 등) 준비 발표
  - \* 발표자료 제출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위원회는 내·외부 3~5인 내외로 구성되며, 지원 금액 및 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시간: 3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 사업 내용에 따라 발표는 조기 종료할 수 있으나, 시간 초과는 불가함
- \*\* 평가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변동 될 경우 사전 공지 예정

- 선정기준

- (가·감점을 포함하여) 평가위원별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를 득점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함
- 동점일 경우 <평가 기준표>의 사업 활용성 항목 중 ① 결과활용성 > ② 기대효과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선정발표: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https://www.foodpolis.kr/dfip>)를 통한 개별 확인

- 메뉴: [기업지원사업] ▶ [지원사업신청목록] ▶ [사업신청]

## 8.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전년도 대비 '25년 지원사업 변경사항(지원한도, 기업부담률 등)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음
- 식품진흥원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13조(소유권 등)에 따라 진흥원 자체수행 및 위탁용역의 결과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진흥원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이전에 관해서는 식품진흥원 「기술이전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기업공동사업 제외
- 선정평가회 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과제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시 사전에 해당분야 담당자에게 위임장 [붙임8] 내 해당사유 및 대체 발표자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협동수행기관과 3자형태로 진행되는 과제의 경우 신청서 작성부터 선정평가까지 모두 참여해야함. (선정평가 시, 신청기업 및 기관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경우 탈락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로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붙임9] 사유별 제재기준 참고
- 식품진흥원 「제재조치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① 지원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 중간평가 결과 "중단"인 과제
  - 최종평가 결과 "불량"인 과제
- ②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 내용을 국내외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 협약 후 과제수행단계에서 포기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⑥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 등을 과제책임자나 과제담당자 등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⑦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전에 적발된 경우
  - ⑦-1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
  - ⑦-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회 이상)
  - ⑦-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회 이상)
- ⑧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 평가 중 유의사항

- 평가 시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신청서류 내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평가 대상 제외 또는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선정 후 유의사항

- 신청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류 내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식품진흥원 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10. 담당자 연락처

지원분야	세부분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온라인 접수방법 등 시스템관련	기업권한전환 승인	디지털정보화부	윤지훈 대리	063-720-0584 jihun@foodpolis.kr
기업공동사업				

- 붙임 1. 기업공동사업 지원조건**
- 붙임 2. 기업공동사업 신청·계획서**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붙임 4. 중복수혜금지약서**
- 붙임 5. 가·감점 기준**
- 붙임 6. 서류검토서**
- 붙임 7. 발표 평가기준표**
- 붙임 8. 위임장**
- 붙임 9. 사유별 제재 기준**
- 붙임 10. 사업비 정산 기준**

## 기업공동사업 지원조건

### ○ 공통 조건

구분	내 용	비 고
지원대상	푸드e음 회원사(협약체결 전 가입완료 필수) * 푸드e음(www.foodpds.kr/fbip) 회원 등록 → 담당자 승인(평가) → 가입완료	사전가입 필요
지원내용	과제당 최대 3개의 항목 선택가능	
컨소시엄 구성	과제당 50% 이상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원료, 장비, 기술 등) 및 연계가능기업으로 구성	

### ○ 지원항목별 세부 조건

지원항목	내 용
공동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사간 물류를 구성하여 공동배송하는 국내 물류비 지원</li> <li>* 운송, 창고임차 등 제조사의 국내물류 관련 항목 지원</li> <li>※ 사례: 제조사A(입주기업) + 제조사B(입주내외 기업)간 공동물류</li> </ul>
공동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으로 수입산을 대체하는 국산원료 구매를 지원</li> <li>* 국산원료·반제품(퓨레, 추출액 등)·부자재(포장재, 외박스, 스티커 등) 구매 지원</li> <li>※ 사례: 제조사A(입주기업) + 제조사B(입주내외 기업)간 수입산대체 국내산 원료 구매</li> </ul>
공동 브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랜드개발과 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한 과정에 소요된 비용 지원</li> <li>* 브랜드개발, 디자인컨설팅, 홍보비, 상표권 등록(주관·참여 공동소유 필수), 회원사간 시제품 생산 등</li> <li>• 업체 간 공동상표를 개발하여, 컨소시엄 구성사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 부착·판매</li> <li>※ 사례: 제조사A(입주기업) + 제조사B 또는 유통사C(푸드e음 회원사)간 공동제품 개발(상표권 등록 등) 후 홍보(홍보영상 및 팸플릿 제작, 오프라인 홍보 등)</li> <li>※ 사례: 제조사A(입주기업) + 제조사B 또는 유통사C(푸드e음 회원사)간 공동제품 개발(상표권 등록 등)에 대한 시제품 생산 및 생산(위탁생산 및 장비 활용 등)</li> </ul>
공동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사간 공동 국·내외 공동판로 활동 지원</li> <li>• 공동 판촉행사에 필요한 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초청비(홍보행사용 제작물·통역·홍보요원 지원 등) 지원</li> <li>※ 사례: 제조사A(입주기업) + 제조사B(입주내외 기업) + 유통사C(푸드e음 회원사)간 공동마케팅(공동판촉행사(임파비, 장치비, 홍보비 등), 기획전(쇼핑몰,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li> </ul>



# 기업공동사업 계획서

# 「기업공동사업」 사업 계획서

## 1 업체 소개

기업현황 (주관기업)	기업형태	<input type="checkbox"/> 입주기업 <input type="checkbox"/> 입주외기업		기업설립 연월일	0000년 00월 00일			
		<input type="checkbox"/> 개인기업 <input type="checkbox"/> 법인기업		기업부설연구소	0000년 00월 00일 설립			
	업종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연구개발전담부서	0000년 00월 00일 설립			
	인력현황	총 000명(생산 0명, 연구 0명, 마케팅 0명, 기타 0명)						
	매출액	2021년	천원	2022년	천원	2023년(예상)	천원	
	주유통처	<input type="checkbox"/> B2C <input type="checkbox"/> B2B 홈쇼핑( 00%), 대형마트( 00%), 백화점( 00%), 온라인쇼핑몰( 00%) 자사사이트( 00%), 자사매장( 00%), 기타 0000 ( 00%)						
	주력품	주력품1		주력품2				
	제품명	연 매출액	제품명	연 매출액				
	어린이 생생사과주스	000,000천원						
제조시설 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조시설(자사)</td> <td>000제품 000톤/일 생산 가능</td> </tr> </table>						제조시설(자사)	000제품 000톤/일 생산 가능
제조시설(자사)	000제품 000톤/일 생산 가능							
기업현황 (참여기업)	기업형태	<input type="checkbox"/> 입주기업 <input type="checkbox"/> 입주외기업		기업설립 연월일	0000년 00월 00일			
		<input type="checkbox"/> 개인기업 <input type="checkbox"/> 법인기업		기업부설연구소	0000년 00월 00일 설립			
	업종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연구개발전담부서	0000년 00월 00일 설립			
	인력현황	총 000명(생산 0명, 연구 0명, 마케팅 0명, 기타 0명)						
	매출액	년	천원	년	천원	년(예상)	천원	
	주유통처	<input type="checkbox"/> B2C <input type="checkbox"/> B2B 홈쇼핑( 00%), 대형마트( 00%), 백화점( 00%), 온라인쇼핑몰( 00%) 자사사이트( 00%), 자사매장( 00%), 기타 0000 ( 00%)						
	주력품	주력품1		주력품2				
	제품명	연 매출액	제품명	연 매출액				
	어린이 생생사과주스	000,000천원						
제조시설 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조시설(자사)</td> <td>000제품 000톤/일 생산 가능</td> </tr> </table>						제조시설(자사)	000제품 000톤/일 생산 가능
제조시설(자사)	000제품 000톤/일 생산 가능							
제품소개	(작성방향) ♣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제품특징(주관기업)>							
	제품명	김치 유산균을 활용한 어린이 생생 사과주스						
	제품특징	- 제품·서비스의 주요 특징 및 장점						
	<제품특징(참여기업)>							
제품명	김치 유산균을 활용한 어린이 생생 사과주스							
제품특징	- 제품·서비스의 주요 특징 및 장점							

※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작성

## 2

## 사업의 필요성

### (1) 사업추진 시급성 및 중요성

- 기존제품의 한계, 문제점

※ 사업추진과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문제점·전망, 사업추진의 필요성,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2) 사업추진의 목표

- 사업추진의 목표 및 내용

#### ① 사업의 최종목표

※ 동 사업 참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추진하고자 하는 제품의 품질제고·브랜드 개발을 통한 인지도 제고·공동마케팅을 통한 효율성(비용절감 등) 제고 등 추진목표를 구체적 제시

#### ② 주요내용

※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세부적인 추진내용 및 범위, 협력개발제품에 대한 사양·성능·용도·기능 등을 기재,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

## 3

## 수행 내용

### (1) 사업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최종 산출물(시제품, 홍보물, 박람회 참여 등)을 도출하는 과정 요소를 구체적으로 서술

- 추진목표

※ 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정량인 지표를 서술

목 표	세부내용	도출결과(정량지표)
제품개발	○ 공동브랜드 개발 등	상표권 등
국내매출	○ 국내 온·오프라인 스텝인 스텝 등	원
해외수출	○ 해외 초도물량 수출 등	수출계약서 등

### (2) 사업추진 전략

- 협력전략

※ 주관기업과 참여기업간 협력사항(공동이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

- 생산전략

※ 주관기업과 참여기업간 협력을 통한 개발된 제품에 대한 생산하는 과정 요소를 구체적으로 서술

- 상용화 전략

※ 목표시장, 타겟고객, 시장 진출시기, 판매전략 및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

#### ① 주요 판매처

판매처	판매 단가 (천원)	예상 연간 판매량(개)	예상 판매기간(년)	예상 총판매금 (천원)	비고
(국내)		(국내)	(국내)		
(국외)		(국외)	(국외)		
(국내)		(국내)	(국내)		
(국외)		(국외)	(국외)		

**4 추진 일정**

추진 기관	세부 추진내용	추진일정(월)									
		2	3	4	5	6	7	8	9	10	11
주관 기업											
참여 기업											
참여 기업											

**5 소요 예산**

① 기업별

(단위:원)

구분	총 사업비 (a+b)	보조금 (a)	기업 부담금 (b)	자부담율 (b/(a+b)*100)
주관기업				
참여기업				

② 세부 산출내역

구분	총 소요예산 (a+b)	보조금 (a)	기업 부담금 (b)	자부담율 (b/(a+b)*100)
000				
000				
계				

**6 기대 효과**

(1) 경제 산업적 효과  
 ○ 경제기여도  
 ※ 국내외 매출·수출 관련사항을 정량적으로 표현하여 서술

(2) 사회적 효과  
 ○ 사회가치 기여  
 ※ 향후 주관기업과 참여기업간 협력사항(공동이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

【붙임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기업공동사업의 신청 및 접수, 협약체결, 과제 수행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항목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수집·이용목적	신청 및 접수, 협약체결, 과제 수행관리, 수요조사, 성과 및 만족도 조사
보유·이용기간	<b>5년, 미선정기업은 심사후 즉시 파기</b>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 사업 선정 및 수행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성명	직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인)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인)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인)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인)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



## 가·감점 기준

구 분	기 준	적용기산일 (기준일)	적용 기간	점수
가점	지원사업 최종평가결과 <sup>1)</sup> 우수 판정을 받은 경우	최종평가일	2년	3점
	푸드폴리스마켓 <sup>2)</sup> 입점기업의 경우	입점일	-	2점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사업 우수 수료기업	수료증 발급일	2년	3점
	청년기업 <sup>3)</sup> 으로 인정받은 기업		-	3점
	푸드테크 <sup>4)</sup> , 그린바이오 <sup>5)</sup> 창업 <sup>6)</sup> 기업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7년 이내	3점
	국산 농산물 활용 제품 개발 기업 <sup>7)</sup>		-	3점
	수출 실적 보유 기업 <sup>8)</sup>	3년 이내 실적	-	3점
감점	제재조치심의위원회 <sup>9)</sup> 결과에 따름			
참여제한	식품진흥원의 제재조치심의위원회 및 농식품부의 국고보조금 관련 행정처분에 따름			
원칙	- 가점의 상한은 최대 10점, 감점의 하한은 최대 -10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하여 반영 - 참여제한기업의 제재가 식품진흥원의 제재조치 심의결과와 농식품부 행정처분이 다를 경우 농식품부의 행정처분을 우선 적용			

- 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비즈니스지원 활성화사업, 기업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결과에 대하여 최종평가 시 우수판정을 받은 기업
- 2) 푸드폴리스마켓(<https://fmarket.or.kr/>) 입점기업
- 3) 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19~39세 이하의 기업을 말함
- 4) 푸드테크의 정의는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2022.12.)」에 따름
- 5) 그린바이오 정의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2023.2.)」에 따름
-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정의)에 따라 창업기업은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7) 주원료(식품위생법 제7조)를 국내산 농·축산물을 사용하여 생산·유통 중인 기업
- 8) 최근 3년간 직·간접 수출실적 보유기업
- 9) 식품진흥원 내규(「제재조치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적용된 기준을 따름

【붙임 6】

## 서류검토서

기업명		사업명		단위사업명	
-----	--	-----	--	-------	--

평가항목	제출서류 목록	검토 결과	
		적합	부적합
필수서류 제출여부			

평가항목	푸드e음 가입 여부	
	적합	부적합
신청대상여부	○	

사전검토 결과	평가 대상 적합	평가 대상 부적합

위와 같이 제출된 서류를 평가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2025. . .

평가자 : (인)

\* 필요에 따라 양식 내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기업공동사업 평가서

기업명		사업명		단위사업명	
-----	--	-----	--	-------	--

평 가 항 목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소계
<b>사업지원의 적합성 (40)</b>	· 사업의 필요성(20) - 시급성 및 중요도 - 사업계획서 충실도	20	17	14	11	8	
	· 사업의 명확성(20) - 목표의 명확성 - 가격 또는 시장 경쟁력 확보의 적정성	20	17	14	11	8	
<b>사업지원 추진전략 (30)</b>	· 기업수행능력(15) - 기업수행능력 및 과업완수 가능성	15	13	11	9	7	
	· 예산 계획의 적정성(15) - 사업기간 및 사업비 적정성 - 항목별 계획 예산의 적정성	15	13	11	9	7	
<b>사업 활용성 (30)</b>	· 결과 활용성(15) - 사업성과 도출 및 확산 가능성 - 사업 종료 후 공동사업의 지속 가능성	15	13	11	9	7	
	· 기대효과(15)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 생산 혹은 판매증대, 수출 가능성 - 공동사업 활성화 기여도	15	13	11	9	7	
<b>가·감점사항</b>	· 최근 2년간 지원사업 관련 우수 및 불량 건수						사전 기입

합 계(총 100점)	점
-------------	---

<b>지원규모 적정성</b>	적정 보조금(백만원)	적정 지원기간(개월)

## 평 가 의 견

과제개요	* 우수한 점 혹은 미흡한 점에 대한 의견 작성
과제수행	
과제 활용	

## 보 완 요 구 사 항

- \* 탈락으로 판단될 경우 탈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 선정으로 판단할 경우 협약 전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기재

평가위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 사유별 제재 기준

제재 사유	제재기준	비고
1. 협약 후 정당한 사유 <sup>1)</sup> 없이 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감점 3점 (2년)	사용한 사업비는 반환
2. 정산보고 등 불성실한 대응으로 진흥원으로부터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감점 5점 (2년)	경고 1회 공문 발송 시 제재조치 사전알림
3. 지원사업 수행내용이 불량하여 중간평가결과 '중단'이나 최종평가결과가 '불량'으로 나온 경우	참여제한 2년 이내	사용한 사업비는 반환
4.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	참여제한 2년	
나. 해외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	참여제한 5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인정 금액 등의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참여제한 2년	
6. 과제결과물인 지식재산권 등을 진흥원과 협의없이 등록하거나 이전한 경우	참여제한 2년 이내	
7. 지식재산권 등의 기술료 <sup>2)</sup> 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참여제한 2년	
8.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유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참여제한 5년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5 와 6]
9.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법 제 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참여제한 3년	
10.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참여제한 2년 (간접보조사업자) 참여제한 1년 (보조금수령자)	
11. 그 밖에 지원사업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참여제한 2년 이내	

1) 판단은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당될 수 있음

- ① 정부의 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로 이사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제중단을 요청한 경우
- ② 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③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업(기관)에 없을 경우
- ④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2) 기술료는 기술이전료, 실시권을 말함

## 기업공동사업 사업비 정산 기준

□ 공통 기준

- ① 기업공동사업지원계획서 내 사용 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비 변경 시 과제 담당자와 협의 필요
- ② 기업공동사업의 정책과 맞지 않는 사업비 사용은 불가능 하다.
- ③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공인된 적격증빙서류로 증빙해야 한다.
- ④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서는 식품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 의뢰 결과 자료를 첨부한다.
  - \* 사업비 중 기업부담금에서 회계 비용 처리
- ⑤ 그 외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그 하위 법에 따른다.

□ 세부 기준

구 분	허용기준	증빙서류	불인정 항목
공 동 물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운송비용 및 물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주 물류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 및 송장 발행 건만 해당</li> <li>- 물류 창고 보관료(기본료, 할증료, 보관할증료 등)</li> <li>- 입고료 및 하차료, 하역료, 작업료 등</li> <li>- 물류수송을 위한 포장비용 등</li> <li>- 특송업체의 견본품 운송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도시 운송비: 국내 운송업체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송장), 납품처, 이체확인증 물류사진 Packing List 등</li> <li>■ 항구운송비: 물류비 견적서, B/L<sup>1)</sup>, Packing List, 수출신고필증 등 (FOB<sup>2)</sup> 기준의 물류비, 서류발급비 한함)</li> <li>■ 창고비 : 인보이스(송장), 이체확인증, 보관사진 및 작업사진 등</li> <li>■ 물류포장비 : 전자세금계산서, 이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li> <li>■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일체</li> <li>■ 국외 운송비용</li> <li>■ 각종 문서 송달비용 및 무상거래 샘플운송</li> <li>■ 지입차 및 법인차 자체 물류비</li> <li>■ 반송 및 취소 처리 비용</li> </ul>

구 분	허용기준	증빙서류	불인정 항목
		<p>확인증, 물류 포장 전 사진 및 포장 후 사진 등</p> <p>■ 견본품 운송비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이체 확인증, 견본품 운송 전·후 사진 등</p>	<p>■ 증빙서류 누락분</p>
<p>공동 구매</p>	<p>■ 공동으로 수입을 대체하는 국산 원료 구매</p> <p>■ 공동으로 수입을 대체하는 반제품(퓨레3), 추출액 등), 부자재(포장재, 외박스, 스티커 등) 구매시</p>	<p>■ 견적서(제품원물 및 재료가공)</p> <p>■ 거래명세서(사진 必), 수입대체 증빙자료(既거래명세서)</p> <p>■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계좌이체증명서, 통장사본</p> <p>■ 농가 구입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계좌이체 증명서</p> <p>■ 원재료 구매 및 가공 후 사진(必)(가공 전 수율확인 증빙 등)</p> <p>■ 견적서(시제품 생산, 위탁 생산단가, 부분가공 등에 대한 산출비용 포함), 검수조서, 거래명세서, 이체 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p>	<p>■ 사업수행 목적 외 사용된 재료량</p> <p>■ 반송 및 취소 처리 비용</p> <p>■ 증빙서류 누락분</p>
<p>공동 브랜드</p>	<p>■ 브랜드 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한 과정에 소요된 비용</p> <p>- 브랜드 개발(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 및 브랜드 출원·등록 비용</p> <p>- 디자인 컨설팅(매스미디어, 인터넷(포털 배너 광고 등), 상표권 등록 비용, 옥외 매체 등 광고 제</p>	<p>■ 공통</p> <p>- 계약서, 제작 결과물, 세부산출내역서, 거래명세서, 이체 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등</p> <p>■ 브랜드 개발(컨설팅)</p> <p>- 브랜드 등록(출원)증 및 소요비용, 외화송금영수증(환율표시 포함),</p> <p>■ 홍보비, 상표권 등</p>	<p>■ 판촉 행사 관련 장치 운송비</p> <p>■ 증빙서류 누락분</p>

구 분	허용기준	증빙서류	불인정 항목
	작 및 광고비 등 ※ 업체 간 공동상표를 개발하여 컨소시엄 구성사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 부착 판매	- 홍보물(카탈로그, 포스터 등) 제작비용 등 - 국내외 광고제작사 대행 관련 증빙	
<b>공동 마케팅</b>	■ 회원사간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 활동에 소요된 비용 - 쇼핑물 기획전,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등 홍보성 마케팅 비용은 지원금의 10백만원 이하로 한정 - 공동판촉행사에 필요한 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등 지원 ※ 업체 간 공동상표를 개발하여 컨소시엄 구성사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 부착 판매	■ 공통 - 계약서, 제작 판촉활동 결과물, 세부산출내역서,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외화 송금영수증(환율표시 포함) 등 ■ 판촉활동 - (유통매장 판촉) 판촉행상 관련 이벤트 용역, 매체 광고 현수막, 전단지, 인터넷 배너, SNS등 제작 및 홍보비 등에 대한 홍보내역 및 영수증, 송금증 등 관련 증빙(제작 실물 또는 실물 사진 제출 필요) - (온라인 판촉) 판촉 관련 사이트 배너, 슬라이딩 등 제작·홍보, 매체광고비 및 포인트, 쿠폰, 샘플, 증정품 배송 등 이벤트 비용(온라인 매장 발급 증빙 및 온라인 판촉 캡처 화면 등) * 온라인 이벤트 비용한도(포인트+쿠폰(합산): 바우처 판촉 배정예산의 10%이내, 배송료: 배정예산의 10% 이내), 증정품+샘플(합산): 배정예산의 5% 이내 - (판촉요원 고용비(통역포함)) 국가별 지원한도 내에서 실질 발생 비	■ 판촉 행사 관련 장치 운송비, 입점 수수료 ■ 무역실무, 상품화, 인허가 관련 교육비용 등 ■ 홍보행사시 사용한 증정용 시식물품(식품) 비용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 증빙서류 누락분

구 분	허용기준	증빙서류	불인정 항목
		<p>용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 고용업체 활용시, 업체 발행 증빙서류 필요(판촉요원 이름, 근무매장, 근무일수, 지급액 등 기본내용 명시 필수)</li> <li>* 참가업체 직접고용시, 판촉요원 개인별 대금수령증(근무매장, 근무일수, 지급액, 근무자 서명 날인, 신분증 사본 필요)</li> </ul>	
<p><b>공통사항</b></p>	<p>■ 국가공인회계사 정산비용 사업비내 산정 - 식품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이 진행하는 지원금 회계정산에 대한 수행비용</p>	<p>■ 국가공인회계사 날인 정산서</p>	

- 
- 1)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 :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
  - 2) FOB(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부 가격조건) : 해상이건 항공이건 최종 운송수단에 적재할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수출자가 부담하고 제품에 대한 모든 비용책임을 지는 것
  - 3) 퓨레 : 과일을 삶거나 갈아서 가는 체로 걸러 걸쭉하게 만든 것